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미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김해시, 합천군

관 련 자 ① 김해시 ○○○○과

지방○○○○○ ○○○

② 합천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11.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김해시 장유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업의 계약 및 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 ○○○은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태풍 산바 피해 산사태 복구공사’의 계약업무담당자로 부정당제재 업무를 담당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의10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시에 2명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등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동시에 2명이상 6명 미만 사망하는 재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부정당업자의 입찰과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김해 ○○○○○○센터 사망사고 발생 관련 부정당업자 미 제재

김해시 ○○○○○과에서는 김해시 ○○동 0000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388㎡규모의 ○○○○○○센터 건립을 2015. 1.월부터 2017. 9월까지 ○○○○○건설(주)외 1개사와 567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 12. 3. 기계실 및 공연장 부대 철골작업 현장내에서 이동식크레인(100t)을 이용하여 공연장 부분 철골부재 조립 작업중 철골구조물 붕괴 후, 와이어로프로 연결되어 있던 이동식 크레인 연쇄 전도로 인하여 철골 상·하부쪽 작업자가 구조물과 크레인에 의하여 사망2명, 중상1명, 경상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김해시 ○○○○○과(○○○)에서는 2016. 6. 3. 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이 현장소장, 철골공사 현장대리인 등 관련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주)○○기공, ○○○○○건설(주), (주)○○건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처분을 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의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태풍 “산바”피해 산사태 복구공사 입찰 담합업자 부정당업자 미제재

합천군 ○○과에서는 2013년 태풍 “산바”피해 산사태 복구공사 44건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입찰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현황]

산림 법인명	공 사 수 주 현 황							
	계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천원)	계약일	건수	금액(천원)	계약일
계	44	2,241,181	13	849,891		31	1,391,290	
(주)○○○ ○개발	7	398,948	3	208,937	‘13.2.25	4	190,011	‘13.2.20
(주)○○○	9	471,217	3	194,550	‘13.2.25	6	276,667	‘13.2.20
(주)○○○	10	464,226	1	74,613	‘13.2.25	9	389,613	‘13.2.21
(주)○○	9	435,160	3	175,305	‘13.2.25	6	259,855	‘13.2.21
(주)○○	9	471,630	3	196,486	‘13.2.25	6	275,144	‘13.2.20

또한, 표와 같이 합천군 관내 5개 산림법인이 각각 7~10건, 398,948천원~471,630천원의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업체별 공사 수주 건수 및 금액이 골고루 나누어 계약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 합천군에서는 태풍 “산바”피해 산사태 복구공사를 입찰단합 의혹에 대하여 2015. 5. 7일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여 2016. 2. 3일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지방법원 ○○016. 6. 23. (주)○○○, (주)○○○, (주)○○○○개발의 실제 운영자인 ○○○ 벌금 1000만원, (주)○○의 실제운영자인 ○○○ 벌금 5,000천원, (주)○○의 대표이사인 ○○○ 벌금 5,000천원의 약식명령을 처분하였음에도

합천군 ○○과(○○○)에서는 2016. 6. 23.○○원지방법원 ○○지원에 구약

식 기소된 사건번호 ‘2016형 제000, 입찰방해’에 대하여 약식으로 (주)○○○ 대표
○○○에게 일천만원 등 2명에게 벌금형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사유없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 제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 합천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건설현장 사망사고 및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